

●강원도고시제2020-279호

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

「주택법」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7. 17.

강 원 도 지 사

○ 행정처분내역

등록번호	상 호 (대 표)	영업소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 (기 간)	처분 근거
강원-주택 2013-0011	이도주택건설(주) (양용철)	강원 동해시 부곡1길 1, 2층(부곡동)	등록기준 미달(사무실)	영업정지 3개월 (2020.7.17. ~2020.10.16.)	「주택법」 시행령 제18조 1항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서울특별시고시제2020-309호 중 정정

관보 제19793호 별권(2020년 7월14일)에 고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9호 중 오류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0. 7. 17.

서울특별시장

당 초	변 경	비 고
진접선(당고개~진접)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(안)	진접선(당고개~진접)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	관보 제19793호 별권, 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
진접선(당고개~진접)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	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39호(2018.9.5.) 사업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3호(2019.6.7.) 사업계획변경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15호(2020.3.25.) 사업계획변경 정정승인된 「진접선(당고개~진접) 차량기지 건설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,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	관보 제19793호 별권, 2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